국립농업박물관법안 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86

발의연월일: 2020. 10. 27.

발 의 자:김영진·백혜련·김윤덕

최종윤 • 인재근 • 이해식

주철현 · 서삼석 · 이개호

신영대 • 이정문 • 정일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2022년 개관 예정인 농업 분야 최초의 박물관인 국립농업박물관의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존·관리하는 전시 콘텐 츠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을 알리고, 농업 역사·농경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의 활성화 를 도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·교육·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(안 제1조).
- 나.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업 및 농촌공동체의 유물과 사료를 발굴・보

- 존·연구 및 전시하는 기관으로서 공공법인으로 설치하고자 함(안 제2조).
- 다. 박물관은 농업 및 농촌공동체의 유물과 사료를 수집·보존·관리하고 전시·체험시설 등의 운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(안 제5조).
- 라. 박물관은 관장을 포함한 11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, 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면하며, 이사와 감사는 정관에 따라 임면하도록 함(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).
- 마. 박물관 사업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, 보조금, 기부금, 차입금,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함(안 제11조).
- 바. 국립농업박물관 건축물의 소유권 확보 및 부지의 무상사용 근거를 마련함(안 제12조).
- 사.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수 있음(안 제14조).
- 아. 관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(안 제17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 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68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국립농업박물관법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·교육·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·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법인격) 국립농업박물관(이하 "박물관"이라 한다)은 법인으로 한다.
- 제3조(설립) ①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 -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. 목적
 - 2. 명칭
 - 3. 사무소
 - 4. 설립허가의 연월일
 - 5.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
 - ③ 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「민법」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
- 제4조(정관)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

여야 한다.

- 1. 목적
- 2. 명칭
- 3.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
- 4.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
- 5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- 6.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
- 7. 임직원에 관한 사항
- 8. 이사회에 관한 사항
- 9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10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- ② 박물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제5조(사업)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박물관 기본 운영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
 - 2. 농업 및 농촌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유물과 사료(이하 "박물관 자료"라 한다) 및 미래농업에 관한 사항의 수집·보존·관리·조사·연구·전시·체험·교육
 - 3. 박물관 자료 등의 홍보·활용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보급
 - 4. 박물관 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·협력

- 5. 박물관 전시·체험시설 등의 운영 및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6. 박물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
- 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
- 8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-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6조(임원) ① 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, 상임이사 3명, 7명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
 - ② 관장은 상임으로 하고,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.
 -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면하고,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7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
 -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.
- 제8조(임원의 직무) ①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 -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.
- ④ 감사는 박물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
- 제9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-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, 제35조제2항·제3항,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·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는 당연히 퇴직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- 제10조(이사회) ① 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둔다.
 -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
 - ③ 관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,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다만.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

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- ⑤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수 있다.
- 제11조(재원)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 - 1.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· 보조금 및 기부금
 - 2. 차입금(다만, 장기차입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)
 - 3.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
 - 4. 그 밖의 수입금
 -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 - ③ 개인・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
 - ④ 제3항에 따른 기부 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국유·공유재산의 대부·사용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농업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

- 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제2조에 따른 박물관에 무상으로 대부 ·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·사용·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,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제13조(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) ① 박물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 -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③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(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)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·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4조(후원회) ①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박물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.
 -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박물관

- 에 인계하여야 한다.
-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박물관자료의 위탁·관리) ① 국가는 박물관의 설립 당시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하던 박물관 자료의 전문적인 보존·연구를 위하여「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 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 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자료제공의 요청)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·교육기관·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농경문화 및 농업 관련 자료의 열람 ·복사·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17조(공무원 등의 파견요청)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 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을 박물관에 파견할 수 있다.
- 제18조(감독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박물관을 지도·감독하고,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고

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박물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,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.
- 제19조(주변경관의 보존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박물관 주변지역에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 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20조(비밀엄수의무) 박물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1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른 국립농업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농업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- 제22조(준용) 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23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박물관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 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- 제24조(벌칙)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

다.

- 제25조(과태료)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국립농업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 및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설립준비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 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농업박물관설립위원회 (이하 "설립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여 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.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② 설립위원회는 박물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③ 설립 당시의 박물관 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.
 -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

- 으로 박물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
-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,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.
- ⑥ 박물관이 설립될 때까지 박물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담한다.
- ⑦ 설립위원회는 국립농업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 준비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.
- ⑧ 제7항에 따라 채용된 자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 국립농업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- 제3조(물품의 무상양도)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(국립 농업박물관 건립·운영에 한정한다)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(박물관 자료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「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.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,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- 제4조(권리·의무의 승계)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은 이 법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(국립농업박물관 건립·운영에 한정한다)에 속 한 권리·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.
- 제5조(설립 당시의 예산)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박물관은 설립 당시 박물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(국립 농업박물관 건립·운영에 한정한다)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

집행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박물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.
- 제6조(직원의 승계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박물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인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 으로 구분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, 신분보장 및 복무관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) 박물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박물관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.